

종합감사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재단법인 독도재단 종합감사 -

2023. 하반기.



□ 처분요구일람표

1.	회계관계직원 운영 부적정	(통보)	.....	3
2.	찾아가는 독도 홍보버스 사업 추진 부적정	(주의)	.....	8
3.	세금계산서 수취 소홀	(시정)	.....	12
4.	물품관리 업무 소홀	(주의)	.....	14
5.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시정)	.....	16

# 경 상 북 도

## 통 보

제 목 회계관계직원 운영 부적정  
소 관 청 재단법인 독도재단  
관 계 부 서 □□□□□, △△△△△  
내 용

재단법인 독도재단(이하 '독도재단'이라 한다)에서는 재단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각종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독도재단에서는 각종 계약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계약 관련 법령 및 독도재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 1. 계약담당 직원 운영 부적정

「지방회계법」 제4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나누어 맡을 공무원을 임명하거나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독도재단 「회계규정」 제7조에 따르면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지출원 등 회계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회계관직을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8조에 따르면 사무총장은 제7조 각호의 회계관계 임직원을 임명한 때에는 재정보증을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규정 제72조에 따르면 이 규정 및 정관에 규정하는 것 이외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하여는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경상북도재무회계규칙 등의 관련법령을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위 기관은 「지방회계법」 제47조를 준용하여 회계관계업무(계약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을 임명하는 등 계약·회계 관련 업무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계약담당 회계관계직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재정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기관 내 임직원들의 업무분장을 살펴보면 계약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회계관계업무 담당 직원이 존재하지 않아 0000.00월에서 감사일 현재까지 재단의 각종 사업추진 시 계약업무를 계약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재정보증도 되지 않은 사업담당 직원들이 00건, 0,000백만원에 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등 부적정하게 계약·회계업무를 처리하였다.

## 2. 협상에 의한 계약 부적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재공고 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 공고 시에 입찰공고문에 사업내용·기간·예산액·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명시해야 하고, 제안요청서에는 과업내용·요구사항·계약조건·제안서에 대한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등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으로 공고결과 당해 공고가 유찰 되어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제안요청서의 평가 등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평가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표1] 0000 ○○○○○ ◎◎◎ 계약체결 현황

(단위 : 천원)

수의계약체결일	계약금액	계약업체	수의계약사유	비고
0000.00.00.	000,000	☆☆☆☆☆	협상에 의한 계약 단독 응찰에 따른 유찰	

※ 독도재단 제출자료 재구성

그런데 위 기관에서는 [표1]과 같이 ☆☆☆☆☆와 ‘0000 ○○○○○ ◎◎◎ 사업’에 대한 계약 업무를 추진하면서 단독응찰에 따른 유찰(1회)을 사유로 수의 계약<sup>1)</sup>으로 계약을 진행하며 당초에 공고한 제안요청서의 평가기준<sup>2)</sup>을 적용한 평가와 협상과정을 실시하지 않아 계약업체가 용역을 수행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에도 걱정하지 않게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 3.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업무 처리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에 따르면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모집인원은 구성되는 평가위원 수의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가 미리 정한 심사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시·도(주된 근무지 기준)의 위원을 20% 이상 선정해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및 제주특별자치도는 해당 시·도의 위원으로만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예규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3절 입찰과 계약상대자 결정절차 및 [별표1]에 따르면 제안서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분야별 배점은 10점의 범위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고, 정량적 평가분야의 경우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전체배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1) 코로나19로 인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조항 적용(1회 유찰 후 수의계약 가능)  
 2)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따라서, 위 기관에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라 계약업무를 추진할 경우 제안서 평가위원은 최소 7명 이상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하고, 제안서의 정량적 평가의 세부항목의 배점은 정량적 평가 전체 점수의 30% 이내로 평가항목을 구성하여야 하며, 분야별 배점한도는 10점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기관은 0000년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인원을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5인으로 하고 예비 위원 명단을 그 3배수인 15인으로만 구성한 사실이 있으며, 0000년에서 감사일 현재까지 제안서 평가의 정량적 분야 평가항목별 배점을 전체 배점의 30% 이상으로, 분야별 배점 한도는 10점의 범위를 넘어서도록 임의로 구성하여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제안서 평가를 수행하였다.

#### 4. 1인 수의계약 부적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9조에 제1항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고,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다목에 따르면 추정가격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인 계약 중 소기업<sup>3)</sup> 또는 소상공인<sup>4)</sup>과 체결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고, 예외적으로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인 계약,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인 계약 중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등의 업체와 계약하는 경우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3) 중소기업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4)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르면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계약을 진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위 기관에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대상으로 추정가격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2인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기관에서는 0000년에서 감사일 현재까지 추정가격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의 계약에 대해 소기업과의 수의계약 체결 사유로 00건,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00건을 1인 견적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위 내용들을 종합하여 보면 독도재단은 계약 및 회계 관련업무 특히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부재로 인해 상기 1, 2, 3, 4와 같이 위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의 계약이 부적정하게 운영되는 등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위반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조치할 사항 독도재단 이사장은**

- ①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고, 계약 등 업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계약 전담직원을 배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통보)**
- ② 관련자 ○○○과 ◎◎◎은 ◇◇◇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 경 상 북 도

## 주 의 요 구

제 목 ○○○○ ◇◇ ○○○○ 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독도재단  
관 계 부 서 ●●●●●●  
내 용

재단법인 독도재단은 독도에 관한 홍보를 위하여 ○○ ◇◇◇◇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 ◇◇◇◇ 사업 추진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였다.

### 1.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미이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재공고 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 공고 시에 입찰공고문에 사업 내용·기간·예산액·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명시해야 하고, 제안요청서에는 과업내용·요구사항·계약조건·제안서에 대한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등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으로 공고결과 유찰 되어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제안요청서의 평가 등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평가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했다.

그런데 (재)독도재단 ●●●●●에서는 ◎◎◎◎ ◇◇ ○○○○ 용역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공고 유찰을 사유로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진행하였으며, 당초에 공고한 제안요청서의 평가기준을 적용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점수 70점 이상의 계약적격자 여부를 검토하지 아니한 채 계약을 체결하였다.

## 2. 자격요건 부적정 업체와 계약 체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제공고 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 공고 시에 입찰공고문에 사업 내용·기간·예산액·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명시해야 하고, 제안요청서에는 과업내용·요구사항·계약조건·제안서에 대한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등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재)독도재단에서는 공고내용에 따라 용역제안서의 입찰참가자의 자격인 특수차량 제작 및 전시, 홍보, 광고 대행 관련 업체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혹은 차량 임대관련 사업 등록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했다.

그런데 (재)독도재단에서는 공고내용에 따라 특수차량 제작 및 전시, 홍보, 광고대행 관련 업체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혹은 차량 임대관련 사업등록 업체 면허를 보유한 사업자와 계약하여야 함에도 관련 면허가 없는 ○○○과 계약을 체

결하였다.

### 3. 계약 검수 소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검사), 제18조(대가의 지급)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계약대상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사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독도재단 「회계규정」 제57조(계약의 검수), 제58조(대가의 지급)에 의하면 용역, 공사, 또는 제조를 완료하거나 물건을 완납한 때에는 당해 계약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업무담당 부장이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거하여 검사하여야 하며, 용역, 공사, 제조 또는 물건 매입의 대가는 검수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지급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재)독도재단에서는 공사·용역·물품계약을 했을 때에는 공사 준공, 용역 완료 및 물품 납품으로 계약 이행이 끝나면 공사 등이 계약조건에 따라 이행이 되었는지 계약담당자가 직접 검사하여 검사조서를 작성하거나 소속 직원을 검사자로 지정하여 검사 후 검사조서를 작성케 하여, 이 후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독도재단에서는 ○○○○ ◇◇ ○○○○ 용역사업의 계약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으로부터 완료계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으면서, 기본적인 지출서류 양식만을 확인하였고, 특히 내구연한이 있는 집기(키오스크, TV 등)의 재사용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는 등 과업지시서 내용에 따른 사업수행 내역을 적정하게 확인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검수조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여 용역을 완료 처리하고 당해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였다.

그러므로, 상기 1, 2, 3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독도재단에서는 계약 등 회

계처리 과정에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하였으며, 사업완료 후 검수 과정의 소홀한 처리로 불필요한 예산을 집행하게 하여 사업비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독도재단 이사장은**

- ① 앞으로는 사업추진에 따른 행정절차, 계약체결, 예산집행 등 관련규정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관련자 ○○○을 독도재단 「인사규정」에 따라 ◇◇◇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 경 상 북 도

## 시 정 요 구

제 목 세금계산서 수취 소홀  
소 관 청 재단법인 독도재단  
관 계 부 서 ○○○○○○  
내 용

재단법인 독도재단(이하 ‘독도재단’ 이라 한다)에서는 “●●●● ◇◇◇◇ ☆☆ ☆☆”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독도재단 「회계규정」 제57조에 따르면 용역, 공사 또는 제조를 완료하거나 물건을 완납한 때에는 당해계약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업무담당 부장이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거 검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56조 및 제58조에 따르면 용역, 공사, 제조 또는 물건 매입의 대가는 검수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지급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입찰방법 및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산회계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 따르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32조에 따르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등의 사항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독도재단에서는 “●●●● ◇◇◇ ☆☆☆” 사업의 용역계약을 추진하면서 세금계산서 등 관계서류의 발행유무를 확인하여야 하고 세금계산서 등이 발행되지 않았을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서류를 보완할 수 있도록 요구하여 당해계약의 이행을 검사한 후 대금을 지급하여야 했다.

그런데 독도재단에서는 0000 ~ 0000년 기간 동안 “●●●● ◇◇◇ ☆☆☆” 사업을 추진하면서 ○○○○○와 00건의 용역계약에 대한 대금 지급 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의 발행유무를 확인하여 대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총 계약금액인 000,000천원의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일부 금액인 00,000천원의 전자세금계산서만 확인하고 나머지 금액인 000,000천원의 전자세금계산서는 확인하지 않고 계약대금을 지급하는 등 세출예산 집행을 소홀히 하였다.

####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독도재단 이사장은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용역 계약에 대한 대금 지급 시 세금계산서 발행 유무를 확인하여 지급하시기 바라며, 미확인된 000,000천원의 전자세금계산서는 해당 업체와 협의하여 확인 후 적정하게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시정)
- ② 관련자 ○○○○은 ◇◇◇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 경 상 북 도

## 주 의 요 구

제 목            물품관리 업무 소홀  
소 관 청        재단법인 독도재단  
관 계 부 서     ○○○○○, ◎◎◎◎◎  
내 용

재단법인 독도재단(이하 ‘독도재단’ 이라 한다)에서는 민간차원의 독도수호사업 및 국내외 홍보활동을 통한 독도 영유권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독도 홍보 기념품 등의 물품을 구매, 관리 및 출납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독도재단 「물품관리규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르면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하고, 물품관리관은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물품을 교부할 때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독도재단 「회계규정」 제64조,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르면 물품구입시 물품검수를 위하여 검수원을 두고, 검수에는 물품출납원이 입회하여야 하며, 재고품과 공용품은 물품출납원이 책임을 지고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독도재단에서는 독도를 홍보하기 위한 기념품 및 홍보물품 등을 관리 및 출납하면서 물품출납원 등 물품사무관리자에게 물품 교부를 청구하고 이를 심사하여 교부하여야 하고 물품의 관리는 물품출납원이 책임을 지고 보관하여야 했다.

그런데 독도재단에서는 0000년 ~ 0000년 기간 동안 기념품 및 홍보물품 등의 물품을 관리 및 출납하면서 물품출납원 등 물품사무관리자에게 물품 출납요청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각 사업담당자가 임의로 물품을 출납하고, 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관리하지 않는 등 물품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독도재단 이사장은**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경 상 북 도

## 시 정 요 구

제 목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소 관 청 독도재단  
관 계 부 서 ●●●●●  
내 용

재단법인 독도재단(이하 ‘독도재단’ 이라 한다) ●●●●●에서는 부양가족이 있는 소속 직원에게 가족수당 지급하고 있다.

독도재단 「수당규정」 제7조에 따르면 직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부양가족신고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르면 “부양가족<sup>5)</sup>”이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되어있다.

그리고 가족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부양가족신고서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직계존속에 대한 가족수당은 직계존속이 부양의무를 가진 직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며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5)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및 60세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

하고 있을 때 지급대상이며, 부양가족 변동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변동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제5장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 2회 반기별로 해당기관(소속기관, 한시조직 등 포함)의 가족수당 지급 운영 실태를 자체 점검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위 부서에서는 가족수당을 지급받는 소속 공무원의 부양가족 변동 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가족수당 지급 시 반영하여야 했다.

그런데 독도재단 ●●●●●에서는 0000.00. ~ 0000. 00월 기간 동안 부모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는데도 가족수당을 지급받는 소속 직원의 부양가족 변동 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지 않아 ○○○ 등 소속직원 00명에게 가족수당 0,000천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하였다.

####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독도재단 이사장은**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고, 부당하게 지급된 가족수당 0,000,000원을 회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